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송옥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478 발의연월일: 2020. 10. 12.

발 의 자: 송옥주·안호영·남인순

우원식 • 박성준 • 이용빈

이성만・최인호・이수진비

장철민 · 윤미향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사업주의 보험사무 행정처리 부담을 덜어주고, 고용·산재 보험의 가입촉진 및 보험료의 정확한 부과·징수 등을 위하여 노무사, 세무사, 각종 협회 등 공단의 인가를 받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사업주 의 위임을 받아 고용·산재보험사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공단으로부터 현행법 제3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 조에 따라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인가 취소된 경우 후속 제재조치가 마 련되어 있지 아니하여, 인가취소된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재차 인가 신 청을 하더라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아니함.

또한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인가취소 등 행정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공단의 인가취소 처분 전에 폐지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이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재인가를 신청하더라도 이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없음. 그 결과 최근 5년간 인가취소 처분에 해당하는 기관 35개 중 66%에 해당하는 23개 기관이 자진폐지로 취소 처분을 면함.

이에 보험사무대행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인가가 취소되거나 자진폐지 신고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다시 인가를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(안 제33조제6항신설).

법률 호
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3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⑥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폐지하거나 제5항에 따라 인가가 취소된 보험 사무대행기관은 폐지일 또는 인가 취소일부터 1년의 범위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은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다시 인가 받을 수 없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3조(보험사무대행기관) ① ~	제33조(보험사무대행기관) ① ~
⑤ (생 략)	⑤ (현행과 같음)
<u> <신 설></u>	⑥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폐지
	하거나 제5항에 따라 인가가
	취소된 보험사무대행기관은 폐
	지일 또는 인가 취소일부터 1
	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
	정하는 기간 동안은 보험사무
	대행기관으로 다시 인가 받을
	<u>수 없다.</u>